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이윤희

전화 061-280-4319 / 팩스 061-280-7851

보 도 자 료

2024. 7. 23.(화)

제 목

선장이 삭제한 CCTV 영상을 복원하여 선원 살인사건 공범 5명 전원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선장 A와 선원들이 선상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를 장기간 구타하여 살해 후 바다에 유기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지난 6. 5. A를 살인·시체유기로, A를 도와 시체를 유기한 선원 B를 살인방조, 시체유기 등으로 각 구속 기소하였고, 오늘(7. 23.) 단순 폭행으로 송치되었던 선원 C·D·E를 살인방조, 상습폭행으로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였습니다.
-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A가 삭제하여 경찰에서 복원하지 못한 피해자 사망 당일의 CCTV 영상 약 9,700개를 복원 후 전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의학 자문을 청취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 선원들(B·C·D·E)이 피해자의 사망 이전 여러 차례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 신고를 막은 사실 외에도, 사망 당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청소용 호스로 차가운 바닷물을 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급격한 저체온으로 사망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이 확인되어 재발 방지를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선원들에 대한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에 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I 사건관계인

1 피고인

순번	피고인	지위	처분
1	A(남, 45세)	선장	구속 기소 (24. 6. 5.)
2	B(남, 48세)	조리장	
3	C(남, 57세)	선원	구속 기소 (24. 7. 22.) ※ 검찰 직접 구속
4	D(남, 50세)	선원	
5	E(남, 45세)	선원	

2 피해자

- F(남, 50세, 선원) ※ 바다에 시체 유기되어 현재까지 미발견

II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 '24. 3. 초~4. 30.경 피해자를 쇠스랑 등으로 구타하고, 야외에서 자게 하며,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아 쇠약해진 피해자를 의식 소실 상태에 빠지게 하고, 다른 선원들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물을 끼얹도록 하여 저체온 등으로 사망하게 함 [살인] : 경찰 송치
- (피고인 A, B) '24. 5. 1.경 신안군 해상에서 피해자의 시체를 쇠뭉치, 파이프와 함께 그물로 감아 바다에 던짐 [시체유기] : 경찰 송치
- (피고인 B, C, D, E) A의 지시에 따라 '24. 3. 중순~4. 30.경 B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24. 4. 30.경 C는 A의 구타로 의식소실 상태로 쓰러진 피해자에게 선박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쏘 후 방치하고, D와 E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물을 끼얹어 저체온 등으로 사망하게 함 [살인방조] : 검찰 입건
- (피고인 C, D, E) '24. 3. 말~4. 말경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선박 청소용 호스로 피해자에게 바닷물을 쏘 [상습폭행] : 검찰 입건

※ B, C, D, E는 위 일시경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단순 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상습성 인정되어 C, D, E는 상습폭행으로 인지하고, '24. 6. 4. 우선 상해죄로 기소한 B는 공판 과정에서 상습폭행으로 공소장변경 신청

III

수사 경과

- '24. 5. 17. 목포해양서, A·B 구속 송치(죄명 : A의 살인, A·B의 시체유기, B의 폭행) / C·D·E 불구속 송치(죄명 : 폭행)
- ~'24. 6. 4. 검찰 보완수사 및 B의 살인방조 인지
 - 보완수사 사항 : A가 삭제한 피해자 사망 당일 CCTV 영상 복원 및 분석, 법의학 자문 실시, 관련자 조사 등
- '24. 6. 5. 검찰, A·B 구속 기소
- '24. 7. 3. 검찰 추가 보완수사 및 C·D·E의 살인방조 등 인지
 - 추가 보완수사 사항 : CCTV 영상 추가 분석 등
- '24. 7. 4. 검찰, C·D·E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7. 9.)
- '24. 7. 23. 검찰, C·D·E 구속 기소

IV

수사 결과

- ① 고립된 선상에서 벌어진 선장의 살인 범행 전모를 과학수사로 규명
 - 피고인 A는 사건 송치 당시까지 피해자가 사망할 것까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후 조타실에 눕혀 놓았는데 약 1시간 후 갑자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피고인 A가 범행 직후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을 삭제하여 송치 당시까지 복원되지 못했던 상황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이유로 사망하였는지,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기 어려웠음
 - 사건 송치 이후, 대검 디지털포렌직팀은 경찰에서 복원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사망 당일의 CCTV 영상 9,700개를 복원하였고, 검찰은 복원된 영상 전수 분석,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동승 선원 조사 등을 거쳐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의 살인 범행 전모를 밝혀냄

- 피고인 A는 출항 후 약 2개월 간 피해자를 종종 구타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사망 무렵 피해자가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 사망 당일,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구타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그 후 다른 선원들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닷물을 뿌리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D·E는 바닷바람이 부는 선상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호스로 바닷물을 뿌려, 피해자는 조타실로 옮겨진 후 약 15분 만에 저체온 등으로 사망하였음

※ 당시 기온은 약 12도 정도임

② 동료 선원들의 살인방조 및 상습폭행 범행 규명

- 검찰은 방대한 양의 CCTV영상 분석과 전면적인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피고인 C·D·E가 피고인 A의 살인을 돕고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온 사실을 추가로 규명하였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살인 범행을 도왔고,
- 또한 피고인 C는 사망 당일 피고인 A의 구타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선박 청소용 호스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바닷물을 쏟은 다음 선미로 끌고 가 방치하였고,
- 피고인 D와 E는 의식소실로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물을 뿌렸으며, 피고인 D는 비위생적인 선박 청소용 솔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고 다리를 내동댕이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도 명확히 확인하였음

③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

- 검찰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직접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 등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 치료와 법률상담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예정임

④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요청

- 검찰은 선상에서 발생한 범행이 은폐되는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목포수협 등 선원의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에 선상 내 가혹행위 등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선주들을 지도해 달라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였음

V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한 충실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음 ■■■